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중앙회 업무에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추가〉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49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 지원업무를 추가	2
※ 참고자료	8
1. 중소·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 방향(중소기업중앙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성환의원 등 4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8.
3. 회부연월일 : 2024.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중소기업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 지원업무를 추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 지원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 28. (생략) ② ~ ⑨ (생략)	제106조(업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 지원</u> 5. ~ 28.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경제단체로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 등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음¹⁾.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회원) ① 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 건의(제2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경영, 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제3호), 정보화 촉진 사업(제4호),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제5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공동사업(제10호) 등을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으로 규정²⁾함.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3. 정회원에게 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4.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
6. 정회원에게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11.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
12.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15.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운영
16. 창고 등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운영
17.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18.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19.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0.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21.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 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26.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 사업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여 동일 업종의 대기업에 비해 디지털 전환이 뒤처지고 있고, 개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추진이 어려워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 양극화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³⁾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르면,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사업에의 참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규모에 따른 디지털 전환의 해법도 모두 조금씩 달라, 근본적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함.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공유 등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민간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사업 효율화 및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산업현장의 데이터의 수집·가공 및 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는 경우, “산업데이터”와 같은 용어의 정의를 이 법에서

27.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국회의원 김성환 보도자료, “김성환 의원,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 10. 28일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⁵⁾에서는 개정규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증가하여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이 언급되었음.

즉,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사업을 통해 중앙회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⁶⁾하고 있으며, 2025년 사업비와 기관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지원 예산으로 총 169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신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인력 채용 및 운영 규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가 중앙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증가⁷⁾할 수 있다는 것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인 중소

4) 이와 관련하여 현행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로, “산업데이터”를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5)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5. 1.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7)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활용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추계에 필요한 지원 기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다고 함.

기업중앙회의 업무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이에 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⁸⁾에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관한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등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보호·거래·공유 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6조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같은 법 제27조¹⁰⁾에

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업데이터 활용”이란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9)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6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7조(협회의 설립)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른 협회 설립 인가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개정 반대의견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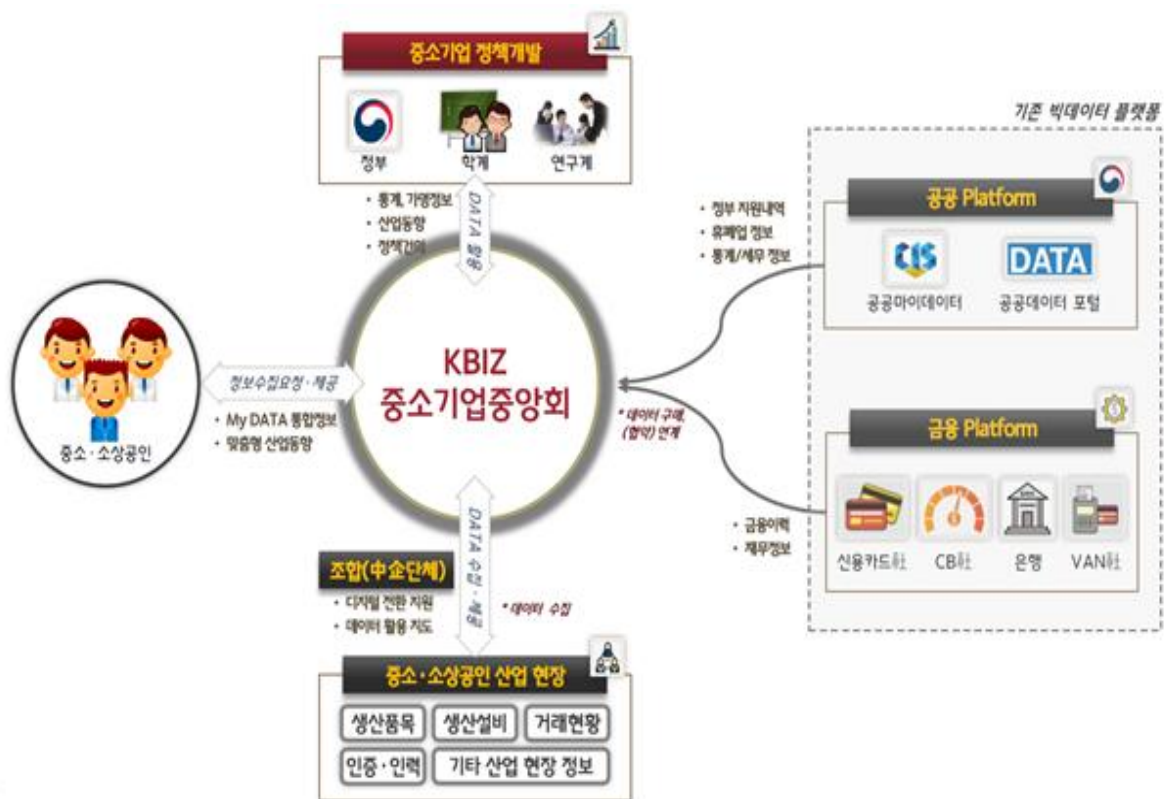
문 의 처
02) 6788-5463

【참고자료 1】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사업 추진 방향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자료)

□ 추진 목적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현장 데이터 수집·가공하여 중소기업 정책 고도화 및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도모

□ 추진 흐름도



□ 기대효과

- (중소기업) 디지털 이해 및 정보가 부족하여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가능
- (협동조합) 업종별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여 업종內 산업간 데이터 교류 활성화 촉진